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 청원』 의 건 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관 련 법

가. 「지방자치법」 제76조

나.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 1호 및 제12호

3. 의견내용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와 59필지, 청원인들의 토지는 당초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1978년 12월 21일 제276호로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된 후, 3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야구장 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다수민원 발생 및 청원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본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위 관련법 및 규칙에 의거 구미시장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한다.

다 음

- 장기적으로 미조성 된 청원인들의 체육시설부지에 대하여, 2012년 구미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사업의 필요성, 주변 환경, 접근성 등 입지여건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시설부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2. 3.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